

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11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-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

2. 입안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결정조서(안)

대상지 위치	구 분	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강남구 삼성동,대치동 일부지역	합 계		609,800.0	감)609,800.0	-	폐지
	시설 보호지구	공용시설 보호지구	609,800.0	감)609,800.0	-	

3. 입안사유

- 가.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 한국전력공사,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어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취지 상실
- 나.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대규모 이전적지가 발생하여 개발가용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 필요
- 다. 해당 지역을 국제 업무 및 MICE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, 중심지미관지구, 공용시설보호지구,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
5.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- 주민 의견청취 사항 : 별도 의견 없음
 - 공람기간 : 2016.3.4 ~ 3.17 (14일간)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구분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	○당초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된 점을 감안하여 지구 폐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 ○다만, 지구 폐지 시 대상지 일대 현재 재정비 중인 ‘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’ 상 적정 불허용도 계획 수립 및 절차 연계 이행 필요.	○현재 재정비 중인 ‘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’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불허용도에 상응하는 불허용도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, 이와 연계하여 이행 중임.	반영
강남구 도시 계획과	○한국전력 및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,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으로, ○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입지할 수 없는 “건축물의 용도”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“불허용도”로 지정되어 있는바,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해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재정비(건축물의 용도 관련)와 함께 추진될 사항임. ○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필요.	○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연계하여 절차 이행 중임. ○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으로,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 됨.	반영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결과

-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 도면 각 1 부.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김수진 (☎ 2133 - 83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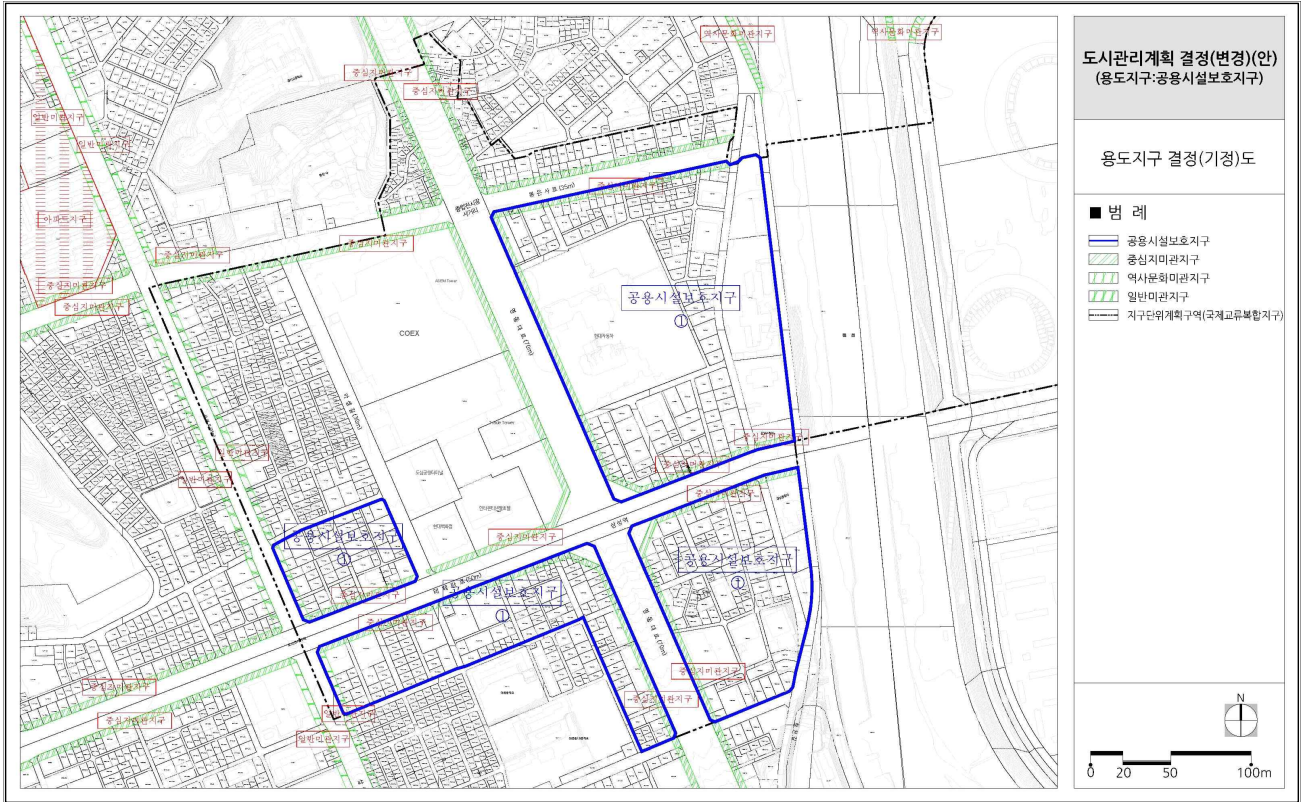
붙임 **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 도면**

위치도

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도면

기정



변경

